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인식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of Autonomic Control of Financial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이 창 균**

Lee, Chang-Kyun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모형 및 가설
- IV. 실증분석 결과
- V.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지방분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영위하고 있는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등 3주체들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들 3주체들에게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나 기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제도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들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도입 및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 주제어: 내부건제시스템,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 본 논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지방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통제 확충방안)의 기초통계를 확장하여 자치단체 영위 주체인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의 인식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임을 밝힌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12. 5. 25, 심사기간(1,2차): 2012. 5. 26 ~ 2012. 7. 23, 게재확정일: 2012. 7. 2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ANOVA of the perception of autonomic control of financial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Study on four groups which are member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ervants, council members, and expert groups.

I have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 recognition of autonomic control of financial management.

Above all, executive control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are financial analysis·diagnostics, investment screen system,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financial operations.

Second, congress control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are administrative audit, expert advisor system, strengthening of local councils, and guarantees of council budgets.

Finally, recognitions of control by the residents are important except improvement of referendum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 Keywords: inter containment system, local government employees, local councilor, citizens

I. 서론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더 한층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등 권한과 자율성은 확대된데 비해 그에 상응하는 재정분권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앙-편중적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치권한과 자율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된 만큼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현행 재정관리 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투·융자심사 강화, 재정분석·진단평가, 지방재정공시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된다. 또한 정부 간 관계(IGR)측면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간 재정정책 등은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내부에서 집행부, 지방의회, 전문가, 주민 간 상호작용이 중시된다. 최근 내부통제의 부적절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¹⁾. 근본적으로는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와 지방의

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예산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사례를 검토한 연구는 이창

회의 기능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권화의 진전으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내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감사원, 2011; 이창균, 2011; 정성호·정창훈, 2011).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가 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는 제한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²⁾. 어찌 보면 제도가 지닌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전문가·시민단체(NGO)가 상호작용적 역할로 내부적으로 서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통제 시스템에 관한 중요도, 현실 적용성, 실효성에 관해 집단 간 인식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대안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율통제에 관한 인식차이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 간(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가)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통계패키지는 PASW SPSS 19.0이며, 분석지표는 5점 리커트(likert)척도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 2장에서 자율통제와 선행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 후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한다. 4장은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여 결론 순으로 마무리한다.

균(2009)의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참고가 될 수 있다.

- 2)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재정관리는 지방재정을 둘러싼 각종 제도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관리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단년도 예산의 원칙을 탈피하여 중·장기적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조달 가능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들 수 있다. 둘째,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각 투자사업별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투·융자심사제도를 들 수 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을 들 수 있다. 넷째, 재정운영상황을 건전성·효율성·계획성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문제요인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방재정진단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지방재정공개제도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감사를 포함한 자치단체 감사제도 등도 통제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창균(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지방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통제 확충방안)

II. 이론적 논의

1. 자율적 통제시스템

자치단체를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든 국가의 법적 근거하에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 상호 관여나 협력 및 지원체제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주로 국가에 의한 관여나 제제를 외부통제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자치단체 내부통제는 자치단체를 영위하는 3주체인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등 자치단체 내부에서 상호 감시하고 재제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율적 통제이라 표현하는 것은 자치단체 3주체인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 주체별로 본연의 의무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상호 통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내부통제]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적 통제는 각종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 중에서 일방적·명령적·강제적인 방식을 말한다. 권력적 통제수단 중에서 조사권과 지시권이 가장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본관계를 비권력적 조정·보완·협동관계로 설정한 반면,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또는 시·도의 권력적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국가에 의한 외부통제제도로는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감사원에 의한 감사,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의한 감사가 있다³⁾.

이상과 같이 외부통제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내부의 자율적 통제제도에 대해서 예산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결산제도, 현금관리, 채권·채무관리, 구매와 계약·자산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 1>과 같이 보여지고 있다⁴⁾.

3)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외부통제는 전체 국민의 일반이익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감사와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한 외부통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외부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자체의 지원, 감사, 시정명령, 분쟁조정, 승인의 유보 등 국가에 의한 통제수단에 대한 내용 규정.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재정책임성강화TF 내부자료. 2011년

4)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재정책임성강화TF 내부자료. 2011년

〈표 1〉 자율적 통제

구 분		자율통제의 구분				
		지방예·결산제도	현금관리	채권·채무관리	구매와 계약	자산관리
관	련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	요	· 세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정 등 · 세출: 지출원인 행위, 지출 · 예산: 추가경정 예산, 이체, 이용, 전용, 이월 등 · 결산: 잉여금, 재무보고서 작성	· 금고 설치 · 세계현금 · 세입세출 외 현금 · 예산집행 업무	· 채무: 지방채발행 한도액 제도 · 채권: 발생의 보고, 고지,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 구매: 조달행정 · 계약: 수의계약 등 제한경쟁입찰과 전자입찰제의 관리 감독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
관	리	· 세입예산: 징수관·수입금출납원 위임 · 세출예산: 지출원·경리관 · 결산: 감사위원 ※ 업무분장의 근거 법령이 존재	좌 동	·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위임 ※ 업무분장의 근거 법령이 존재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 주민참여감독자의 검사 ※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와 기능 명시	· 재산관리관 ·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적	· 세입: 지체 없이 금고에 납입 · 세출: 지출원인 행위 후 송부 등 명시 ※ 예산실명제	· e-호조 시스템 · 금고의 일일보고	· 채무부담행위 등은 예산서류로 관리 ·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 계약대장 관리 ※ 예산집행실명제	· 공유재산 증감 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작성, 의회 보고
	통	· 의회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권 · 감사규칙에 의한 자체감사	좌 동 및 · 금고의 검사	·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감사 · 재정분석 및 진단	·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감사 · 계약심의위원회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감사 · 재정공시제도
회	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 부기회계 처리 지침 ※ 회계담당 공무원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자료: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재정책임성강화TF 내부자료, 2011년

이창균(2011)은 지방정부차원의 내부통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내부 통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나 관리제도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자치단체를 영위하는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등 3주체 간 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통제기능을 유인하는 제도”로 함축하고 있다. 다만 “집행부, 의회, 주민 간 직접 통제하는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단체 3주체들이 본연의 기능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통제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통제를 정리하고 있다(이창균, 2011: 271).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있으나 제도 자체가 지니는 문제점이나 제도 운용의 미흡 등으로 인해 원활한 내부 통제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창균, 2011: 284-302).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을 자치단체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측면으로 구분하여 내부통제를 논의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다(이창균, 2011: 302-303).

첫째, 집행부에 의한 통제는 자체감사부서 운영,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재정위기관리시스템, 지방재정공시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사업예산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도, 전문위원 제도,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운영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주민에 의한 통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해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자체가 지니는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제도의 효과성과 유용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부 통제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적인 통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과 같은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의 효용성보다는 자율적인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부통제 방식은 시스템에 의한 부정 및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해되며, 이럴 경우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가 구축되게 된다. 기존의 상호통제 수단들과 함께 상시 통제를 활용하여 항시적이고 지속적 통제가 가능한 내부적 상호통제의 구축이 필요하다⁵⁾.

5) 특히 행정업무가 분업화·세분화·전문화 되어 가면서 공직자의 경우 형법 등 명백한 위법사례를 제외

<표 2> 자율적 통제

구 분	현행 시스템관련 제도
집행부에 의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감사부서 운영 -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 재정위기 관리시스템 - 지방 재정공시제도 - 중기 지방재정계획제도 - 투·융자심사제도 - 사업예산제도
의회에 의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도 - 전문위원 제도 -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주민에 의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예산제도 - 주민 투표제도 - 주민 감사청구제도 - 주민 소송제도 - 주민 소환제도

자료: 이창균(2011). p.303 일부 내용수정

2. 선행연구

자치단체 내부의 공무원, 지방의회, 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장노순 외(2012)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 주체적 행위자인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참여위원 간 인식차이를 실증분석(ANOVA)결과, 공무원들은 집단 간 갈등초래, 인기영합 예산편성, 집행부 권한약화, 의회심의권 침해 등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성호(2012)는 천안시의 회계부정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결부된 도덕적 해이에서 야기된 사

하고는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더욱 내부통제의 방식은 시스템에 의한 부정 및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해되며 그렇게 될 경우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면서 부산물로써 파생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그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감사 및 직무감찰 등과 같은 다양한 통제 수단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바, 자치단체 스스로 부정과 비리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화된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통제의 강화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예산 및 회계의 관리·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재정책임성강화TF 내부자료. 2011년

례임을 감안할 때 예산부서와 결산부서의 업무상 유기적 통합, 결산검사의 강화, 사업별 실명제, 책임귀속의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외부적 통제방안으로 지방의회를 통한 주기적인 재정진단,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승인 주민투표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정성호·정창훈(2011)에 의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위기의 가능성은 중앙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정부 내부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되었다. 즉, 재정건전성 악화의 근본적 원인은 거버넌스 실패로부터 기인된 구조적 문제이며, 지방재정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로컬 거버넌스 차원의 합목적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창균(2011)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부통제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 지방의회, 및 주민에 의한 내부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집행부에 의한 통제에는 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구축, 외부감사제도도입, 재정출납관제도 신설을, 의회에 의한 통제는 지방의회정책연구실강화(전문위원회제도 도입포함),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을, 주민에 의한 통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모바일참여와 주민예산위원회 도입)와 주민투표개선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근거하여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각 주체들에 대한 인식에 관한 보다 구체적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전술한 바와 같이 인식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행부, 지방의회 및 주민에 의한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도, 현실 적용성, 실효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전문가로 구분하여 실증분석(분산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림 1> 자율적 통제 시스템에 관한 분석틀

분석대상	중앙 및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분석내용	자율적 통제에 관한 인식
분석방법	분산분석(ANOVA)

2. 연구가설

지금까지 자율적 통제에 관한 실증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창균(2011: 15-28)은 집행부에 의한 통제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부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미흡, 투·융자 심사 부실, 사업예산제도 측면에서 연계미흡, 재정분석·진단제도의 기능부실, 재정공시의 예·결산과의 연계미흡, 자체감사 비효율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사무감사, 정책연구실과 전문위원의 법적 위상미흡에서, 주민에 의한 통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부실, 주민투표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실효성 및 유용성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성호(2012)는 천안시의 재정건전성악화의 근본원인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회계부정과 연관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결산의 업무상 유기적 통합부재와 투·융자심사의 형해화, 의회의 결산감사의 부실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에 근거하여 예·결산의 업무상 유기적 통합, 결산검사제도 강화, 사업별 실명제⁶⁾, 거시적 관점에서 자본예산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사업승인 주민투표제도(bond referendum)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제도 자체가 지니는 한계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제도에 한정하여 설명하자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감사위원 3~5명이고 20일간 결산검사(감사) 행위를 하게 된다. 결산검사행위는 실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제도 자체가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등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더해 더 많은 문제를 야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집단간 인식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제도의 중요성 인식, 현실 적용 가능성, 실효성에 관한 인식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제도개선 및 제도의 신설(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자율적 통제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 자율적 통제의 현실적용성에 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3: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에 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6) 본 연구의 투·융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동일한 맥락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율적 통제는 집행부, 의회, 주민에 의한 통제로 나누어 구분하여 중요도, 현실적용성, 실효성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중요도’는 “대안의 현실적용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안 자체가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지”에 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것이고, ‘현실적용성’은 “대안에 대해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대립 등 적용가능성 및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실효성’은 가령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다면 실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에 어느 정도 효과 및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한 것이다(이창균, 2011: 323).

<표 3> 집행부에 의한 통제

번호	집행부에 의한 통제
1	자체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제도개선) : 감사부서의 자치단체장 예속을 벗어나 집행부 내부 통제장치로서 예산 및 재정운영 감사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유인
2	재정출납관제도 신설(제도신설) : 일본의 출납장 및 수입역과 같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치단체장의 재정지출 검사 및 통제 역할
3	재정분석 및 진단시스템 강화(제도개선) : 현행 재정분석진단제도를 종합적 진단제도로 보완하여 재정운영 관리시스템으로서 재정분석 및 진단의 철저 및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건전 재정운영 유도
4	재정위기관리시스템 개선 및 지방채무 범위 확대(제도개선) : 사전적 지방재정운영 관리 철저를 기하고 지방채무의 범위를 공사, 공단까지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운영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
5	재정운영상시모니터링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제도신설) : 예산집행 및 자금흐름 등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운영 상황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어 건전한 재정운영 유인
6	지방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제도신설) : 자치단체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생성부터 종료까지 모든 이력이 관리되어 중복투자 억제 및 투자사업 효율적 추진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관리수단으로서 기능
7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선(제도개선) :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주민 등 내부통제으로서 기능 강화
8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개선(제도개선) : 중기지방재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성을 유도
9	투·융자심사제도 개선(제도개선) : 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 및 재정운영의 당위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도
10	사업예산제도 강화(제도개선) : 사업예산제도를 강화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목표 및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 건전성 유도
11	외부감사제도 도입(제도신설) :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 및 통제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이중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

자료: 이창균(2011) p.323-324

<표 4>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구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1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개선 및 실효성 확보(제도개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범위 확대,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임시회를 지정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충실도를 확보하여 집행부 통제기능 강화
2	전문위원 제도의 개선 및 강화(제도개선) : 전문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비상임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집행부의 예산 및 재정운영 통제기능 강화
3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및 연수기능 강화(제도개선) : 지방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집행부의 재정 운영관련 통제업무 등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연수를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정책연구실의 연구보좌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및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
4	지방의회의 예산요구권 보장(제도신설) :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나 지방의회에 제한적으로 일부 예산요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
5	전원위원회 제도 도입(제도신설) : 지방의원 정족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상임위 운영을 보완하여 적시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안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지방의회 활성화 유인

자료: 이창균(2011) p.324-325

<표 5> 주민에 의한 통제

번호	주민에 의한 통제
1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제도개선)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관리 및 통제를 통한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도
2	주민모발일참여제도 도입(제도신설) :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적시 및 상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사업추진 등 주민의견 활용을 통한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
3	주민투표제도 개선(제도개선) : 현행 투표법의 부적절한 조항을 개선하여 주민투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에 의한 통제기능 강화
4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제도개선) : 감사청구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감사제도의 보완, 주민감사청구 심의 위원회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한 통제기능 강화
5	주민소송제도 개선(제도개선) : 주민소송의 대상 영역을 재무나 회계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무영역중 고유사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 및 통제기능 강화
6	주민소환제도 개선(제도개선) : 주민의 소환대상에 있어서 선출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선출직 역할 및 책임성을 강화
7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 도입(제도신설) : 자치단체장의 정책실패에 대해 일정부분 금전적 배상을 주민이 요구하게 하여 주민에 의한 사전적 및 사후적 건전재정운영 유도
8	주민예산위원회 제도 도입(제도신설) : 집행부의 예산편성시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등에 있어서 주민예산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유도

자료: 이창균(2011) p.325.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및 분산분석 결과

자치단체 집행부(행정안전부의 지방관련 공무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였다. 집행부, 지방의회, 전문가 등 입장에 따라 선호하는 통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또한 각 대안들의 현실적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집행부의 설문조사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을 포함하게 되어 집행부의 설문조사 샘플수가 높아졌다. 설문조사는 그룹별 각각 60부씩 하여 총 240부중에서 응답자수는 집행부 공무원 105명(중앙공무원 48명, 자치단체 공무원 57명), 지방의회 의원 39명,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41명으로 응답자는 총 185명이다.

설문방법은 집행부에 의한 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등 3가지 부문별로 각각 구분하여 중요도, 현실적용성, 실효성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중요도는 현실적용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수 자체가 중요하고 의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현실적용성은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대립 등 적용가능성 및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실효성은 제도 등이 채택되어 도입될 경우 지방재정운영에 어느정도 기대효과(실효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변수는 공통적으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5: 매우 높음, ..., 1: 매우 낮음)를 사용하였다.

<표 6> 인구 속성적 특징

구분	빈도	퍼센트(유효)	누적퍼센트
중앙공무원	48	25.9	25.9
지방공무원	57	30.8	56.8
지방의원	39	21.1	77.8
전문가	41	22.2	100
합 계	185	100.0	

자율통제에 관한 인식은 <표 7>과 같다. 집행부에 의한 통제에 관한 인식으로 중요도는 자체감사 독립강화(3.57), 중기지방재정계획(3.26)순이고, 현실적용성은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3.49), 사업예산제도강화(3.03)순이며, 실효성은 재정위기관리시스템(3.44), 중기지방재정계획(2.87) 순이다.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에 관한 인식으로 중요도는 지방의회 정책연구(3.59), 지방의회 예산 요구권보장(2.87)순이고, 현실적용성은 행정사무 감사권(3.32), 전원위원회제도개선(2.99)순이며, 실효성은 지방의회 정책연구(3.31), 전원위원회제도개선(2.78) 순이다.

주민에 의한 통제에 관한 인식으로 중요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3.69), 주민모바일참여제도도입(3.14)이고, 현실적용성은 주민참여예산제도(3.31), 주민소환제도(2.93)순이며, 실효성은 주민소환제도(3.30), 지방자치단체장 배상제도(2.77)순이다.

<표 7> 자율적 통제 인식에 관한 기술통계

집행부		평균	지방의회		평균	주민		평균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중	3.57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개선	중	3.42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중	3.69
	현	3.35		현	3.32		현	3.31
	실	3.06		실	3.12		실	3.20
재정출납제도신설	중	3.49	전문위원회제도개선	중	3.52	주민모바일참여제도 도입	중	3.14
	현	3.14		현	3.29		현	3.03
	실	3.26		실	3.25		실	3.21
재정분석강화	중	3.48	지방의회정책연구실 강화	중	3.59	주민투표제도개선	중	3.14
	현	3.43		현	3.12		현	3.01
	실	3.13		실	3.31		실	3.08
재정위기관리 시스템개선	중	3.54	지방의회예산요구권 보장	중	2.87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중	3.22
	현	3.29		현	3.09		현	3.19
	실	3.44		실	2.98		실	2.93
재정운영모니터링 시스템신설	중	3.30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중	3.15	주민소송제도개선	중	3.27
	현	3.31		현	2.99		현	3.11
	실	2.90		실	2.78		실	3.04
지방투자사업이력 관리 시스템구축	중	3.46	X	X	X	주민소환제도개선	중	3.37
	현	3.49					현	2.93
	실	3.31					실	3.30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선	중	3.24	X	X	X	자치단체장배상제 도입	중	3.53
	현	3.42					현	3.21
	실	2.93					실	2.77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	중	3.20	X	X	X	주민예산위원회제도 도입	중	3.16
	현	3.38					현	3.07
	실	2.87					실	2.83
투융자심사제도개선	중	3.52	X	X	X	X	X	
	현	3.32						
	실	3.42						
사업예산제도강화	중	3.32	X	X	X	X	X	
	현	3.03						
	실	2.95						
외부감사제도도입	중	3.46	X	X	X	X	X	
	현	3.17						
	실	3.29						

참고: 중: 중요도, 현: 현실적용성, 실: 실효성

〈표 8〉 자율적 통제의 중요도에 관한 분산분석(ANOVA)결과

구 분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재정출납제도신설	집단-간	6.968	3	2.323	2.544	.058 [*]
	집단-내	165.249	181	.913		
재정분석강화	집단-간	58.245	3	19.415	19.530	.000 ^{***}
	집단-내	179.938	181	.994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집단-간	30.376	3	10.125	15.075	.000 ^{***}
	집단-내	121.570	181	.672		
재정운영모니터링시스템신설	집단-간	12.693	3	4.231	5.786	.001 ^{***}
	집단-내	132.355	181	.731		
지방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집단-간	7.383	3	2.461	2.156	.095 [*]
	집단-내	206.638	181	1.142		
투융자심사제도개선	집단-간	19.144	3	6.381	7.966	.000 ^{***}
	집단-내	144.997	181	.801		
사업예산제도강화	집단-간	25.029	3	8.343	8.507	.000 ^{***}
	집단-내	177.511	181	.981		
행정사무감사조사권개선	집단-간	13.794	3	4.598	4.858	.003 ^{***}
	집단-내	171.319	181	.947		
전문위원회제도개선	집단-간	33.505	3	11.168	16.478	.000 ^{***}
	집단-내	122.679	181	.678		
지방의회정책연구실강화	집단-간	53.558	3	17.853	21.394	.000 ^{***}
	집단-내	151.037	181	.834		
지방의회예산요구권보장	집단-간	24.705	3	8.235	9.925	.000 ^{***}
	집단-내	150.182	181	.830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집단-간	13.440	3	4.480	6.667	.000 ^{***}
	집단-내	121.619	181	.672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	집단-간	27.479	3	9.160	8.803	.000 ^{***}
	집단-내	188.338	181	1.041		
주민모바일 참여제도도입	집단-간	15.274	3	5.091	4.646	.004 ^{***}
	집단-내	198.348	181	1.096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집단-간	34.593	3	11.531	10.265	.000 ^{***}
	집단-내	203.320	181	1.123		
주민소송제도개선	집단-간	34.744	3	11.581	15.219	.000 ^{***}
	집단-내	137.742	181	.761		
주민소환제도개선	집단-간	14.529	3	4.843	7.042	.000 ^{***}
	집단-내	124.476	181	.688		
자치단체장배상제도도입	집단-간	102.172	3	34.057	30.835	.000 ^{***}
	집단-내	199.914	181	1.104		

주1: 집단-간, 집단-내, 합계로 표시되나 지면상 제약으로 합계는 제외 * p<0.1 ** p<0.05, *** p<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표시하지 않음.

〈표 9〉 자율적 통제의 현실적용성에 관한 분산분석(ANOVA)결과

구 분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집단-간	90.538	3	30.179	35.627	.000***
	집단-내	153.322	181	.847		
재정출납제도	집단-간	50.493	3	16.831	21.896	.000***
	집단-내	139.129	181	.769		
재정분석강화	집단-간	53.305	3	17.768	18.277	.000***
	집단-내	175.960	181	.972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집단-간	41.280	3	13.760	16.544	.000***
	집단-내	150.536	181	.832		
재정운영모니터링시스템신설	집단-간	63.007	3	21.002	19.755	.000***
	집단-내	192.431	181	1.063		
지방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구축	집단-간	59.424	3	19.808	17.854	.000***
	집단-내	200.814	181	1.109		
지방재정공시제도개선	집단-간	21.106	3	7.035	9.374	.000***
	집단-내	135.845	181	.751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	집단-간	34.240	3	11.413	10.901	.000***
	집단-내	189.512	181	1.047		
투융자심사제도개선	집단-간	7.196	3	2.399	2.399	.069*
	집단-내	180.988	181	1.000		
외부감사제도도입	집단-간	24.612	3	8.204	7.686	.000***
	집단-내	193.194	181	1.067		
행정사무감사조사권개선	집단-간	30.080	3	10.027	13.738	.000***
	집단-내	132.104	181	.730		
전문위원회제도개선	집단-간	54.299	3	18.100	20.537	.000***
	집단-내	159.517	181	.881		
지방의회정책연구실강화	집단-간	33.046	3	11.015	11.519	.000***
	집단-내	173.094	181	.956		
지방의회예산요구권보장	집단-간	132.141	3	44.047	47.322	.000***
	집단-내	168.475	181	.931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집단-간	37.420	3	12.473	18.881	.000***
	집단-내	119.574	181	.661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	집단-간	42.054	3	14.018	13.257	.000***
	집단-내	191.384	181	1.057		
주민모바일참여제도도	집단-간	22.694	3	7.565	6.741	.000***
	집단-내	203.112	181	1.122		
주민투표제도개선	집단-간	36.553	3	12.184	15.060	.000***
	집단-내	146.441	181	.809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집단-간	112.179	3	37.393	33.045	.000***
	집단-내	204.815	181	1.132		
주민소송제도개선	집단-간	95.543	3	31.848	28.495	.000***
	집단-내	202.295	181	1.118		
주민소환제도개선	집단-간	11.354	3	3.785	5.161	.002***
	집단-내	132.733	181	.733		
자치단체장배상제도도입	집단-간	106.794	3	35.598	34.275	.000***
	집단-내	187.985	181	1.039		
주민예산위원회제도도입	집단-간	62.275	3	20.758	16.070	.000***
	집단-내	233.811	181	1.292		

주1: 집단-간, 집단-내, 합계로 표시되나 지면상 제약으로 합계는 제외 * p<0.1 ** p<0.05, *** p<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표시하지 않음.

<표 10>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에 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구분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집단-간	29.784	3	9.928	9.587	.000***
	집단-내	187.438	181	1.036		
재정출납제도	집단-간	69.202	3	23.067	20.840	.000***
	집단-내	200.344	181	1.107		
재정분석강화	집단-간	34.129	3	11.376	15.510	.000***
	집단-내	132.758	181	.733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집단-간	60.558	3	20.186	23.558	.000***
	집단-내	155.096	181	.857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집단-간	47.395	3	15.798	13.114	.000***
	집단-내	218.043	181	1.205		
지방재정공시제도개선	집단-간	11.162	3	3.721	5.478	.001***
	집단-내	122.925	181	.679		
투융자심사제도개선	집단-간	41.883	3	13.961	12.194	.000***
	집단-내	207.230	181	1.145		
외부감사제도도입	집단-간	82.882	3	27.627	18.733	.000***
	집단-내	266.934	181	1.475		
행정사무감사조사권개선	집단-간	104.002	3	34.667	33.487	.000***
	집단-내	187.382	181	1.035		
전문위원회제도개선실효성	집단-간	89.072	3	29.691	35.949	.000***
	집단-내	149.490	181	.826		
지방의회정책연구실강화	집단-간	94.404	3	31.468	29.756	.000***
	집단-내	191.412	181	1.058		
지방의회 예산요구권보장	집단-간	115.836	3	38.612	36.768	.000***
	집단-내	190.077	181	1.050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집단-간	29.778	3	9.926	14.539	.000***
	집단-내	123.573	181	.683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	집단-간	66.052	3	22.017	19.388	.000***
	집단-내	205.548	181	1.136		
주민모바일참여제도도입	집단-간	70.633	3	23.544	13.335	.000***
	집단-내	319.562	181	1.766		
주민투표제도개선	집단-간	65.266	3	21.755	20.454	.000***
	집단-내	192.518	181	1.064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집단-간	56.988	3	18.996	17.806	.000***
	집단-내	193.099	181	1.067		
주민소송제도개선	집단-간	106.292	3	35.431	30.926	.000***
	집단-내	207.362	181	1.146		
주민소환제도개선	집단-간	68.273	3	22.758	28.452	.000***
	집단-내	144.775	181	.800		
자치단체장배상제도도입	집단-간	22.726	3	7.575	7.544	.000***
	집단-내	181.739	181	1.004		
주민예산위원회제도도입	집단-간	29.395	3	9.798	8.909	.000***
	집단-내	199.070	181	1.100		

주1: 집단-간, 집단-내, 합계로 표시되나 지면상 제약으로 합계는 제외 * p<0.1 ** p<0.05, *** p<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표시하지 않음.

1) 중요도 실증분석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적 통제의 중요도에 관해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재정출납제도신설, 재정분석 강화,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재정운영모니터링시스템신설,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투·융자심사제도개선 사업예산제도강화,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 전문위원제도개선, 지방의회정책연구실강화, 지방의회 예산요구권 보장,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 주민모바일 참여제도도입,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소환제도개선,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도 도입 등에 관해 집단 간 인식차이를 보인다. 반면,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지방재정공시제도개선,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민투표개선, 및 주민예산위원회 제도도입에 관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현실적용성 실증분석

〈표 9〉와 같이 자율적 통제의 현실적용성에 관해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사업예산제도 강화를 제외하고,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재정출납제도, 재정분석 강화,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재정운영모니터링시스템신설,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공시제도개선,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 투융자심사 제도개선, 외부감사제도도입,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 전문위원 제도개선,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강화, 지방의회 예산 요구권 보장, 전원위원회 제도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강화, 주민모바일 참여제도도입, 주민투표제도개선,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소환제도개선, 자치단체장 배상제도 도입, 주민예산위원회제도도입 등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를 보인다. 반면, 사업예산제도의 강화는 집단 간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실효성 실증분석

〈표 10〉은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에 관해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자체감사 독립성 강화, 재정출납제도, 재정분석 강화,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공시제도개선, 투·융자심사 제도개선, 외부감사제도도입,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 전문위원 제도개선,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강화, 지방의회 예산요구권 보장, 전원위원회 제도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강화, 주민모바일 참여제도도입, 주민투표제도개선,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소환제도개선,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도 도입, 주민예산위원회제도도입 등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를 보인다. 재정운영모니터링시스템신설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 사업예산제도 강화에서는 인식차이가 없다.

2. 집단 간 사후검정-다중비교 분석결과

〈표 8〉 ~ 〈표 10〉까지는 집단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세부적 인식차이는 사후검정-다중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부록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자율적 통제의 중요도에 관한 집단 간 세부 차이⁷⁾는 다음과 같다.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재정분석강화, 사업예산제도강화,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도 도입이다.

지방의원이 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분야는 전원위원회 도입과 전문위원회 제도개선과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이다. 특히하게,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전문가 집단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 주민소환제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부록 2〉는 자율적 통제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관한 집단 간 세부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재정분석강화, 재정위기 관리시스템 개선, 재정운영모니터링 시스템개선,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강화, 지방의회 예산요구권 보장, 주민투표제도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소환제도개선,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도 도입, 주민예산위원회 제도도입 등이다.

또한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분야는 재정출납관제도,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강화이다. 전문가 집단은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비해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재정출납관제도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화에 긍정적이고, 지방공무원에 비해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제도 개선, 의회정책 연구기능 강화, 의회 예산 요구권 강화, 주민모바일참여제도 도입 등에 관해 긍정적이다. 반대로 지방공무원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주민소환제도에 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부록 3〉은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에 관한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재정 분석 강화, 재정위기 관리시스템 개선,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지방의회예산 요구권 보장, 주민투표제도개선,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

7) 사후검정-다중비교는 scheffe를 이용하였다.

소환제도개선이다.

아울러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비해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재정출납관제도도입,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지방 재정공시 강화, 투·융자심사 강화, 외부감사 도입, 지방의회 정책연구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주민 모바일참여 제도도입,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도 도입에 관해 긍정적이고, 전문가집단이 타 전체집단에 비해 긍정적 인식을 지니는 분야는 주민예산위원회제도도입이고,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에 비해 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구축, 투·융자심사 강화, 외부감사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에 긍정적이며, 지방공무원에 비해 재정출납관제도 도입, 행정사무감사 개선, 전문위원제도개선, 의회정책연구실 강화, 의회예산요구권 보장, 전원위원회 제도도입, 자치단체장 배상제도도입 등에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 실효성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함축하면, 지방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도, 현실적용 가능성, 실효성에 관해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소극적인 반면, 중앙공무원이 오히려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앙공무원들의 인식은 재정건전성 관리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하면서 주민에 의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대체로 소극적이며 지방의원들은 전문위원 등 의회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의 관점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과는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주체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11>와 같다.

<표 11> 분석결과의 종합

변 수		긍정적 인식 (1순위, 2순위: 근소한 차이시 표시)					
		차이 유무*	중요도	차이 유무*	현실적용성	차이 유무*	실효성
집행부에 의한 통제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개선	N	n/a	Y	중	Y	중
	재정출납관제도 도입	Y	중	Y	중, 전	Y	중
	재정분석진단강화 개선	Y	중	Y	중	Y	중
	재정위기관리시스템 개선	Y	중	Y	중	Y	중
	재정운영 상시모니터링	Y	중	Y	중	N	n/a
	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	N	n/a	Y	중	Y	전, 중
	지방재정공시 강화	N	n/a	Y	중	Y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	N	n/a	Y	중	N	n/a
	투·융자심사제도 개선	Y	중	Y**	n/a	Y	중

변 수		긍정적 인식 (1순위, 2순위: 근소한 차이시 표시)					
		차이 유무*	중요도	차이 유무*	현실적응성	차이 유무*	실효성
	사업예산제도 개선	Y	중	N	n/a	N	n/a
	외부감사제도 도입	N	n/a	Y	중	Y	중
의회에 의한 통제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개선	Y	중	Y	중	Y	중
	전문위원제도 개선	Y	지, 중	Y	중	Y	중
	지방의회정책연구실 강화	Y	중	Y	중, 전	Y	중
	지방의회예산요구권 보장	Y	지, 중	Y	중	Y	중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Y	지	Y	중	Y	전, 지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	Y	전	Y	중	Y	전, 지
주민에 의한 통제	주민모바일참여제도 도입	Y	전	Y	전	Y	중, 전
	주민투표제도 개선	N	n/a	Y	중	Y	중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Y	중	Y	중	Y	중
	주민소송제도 개선	Y	중	Y	중	Y	중
	주민소환제도 개선	Y	중	Y	중	Y	중
	단체장배상제도 도입	Y	중	Y	중	Y	중
	주민예산위원회 신설	N	n/a	Y	중	Y	전

주1 : 중: 중앙공무원, 지: 지방공무원, 의: 의회의원, 전: 전문가, n/a: 차이성(관련)없음

주2 : 사후검정-다중비교 결과에 근거함(유의수준 0.05)

* : 분산분석(ANOVA) 결과에 근거한 차이유무를 표시(Y, N)

** : p<0.1에서 유의함

V.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 및 결론

1. 정책적 함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부통제의 중요도, 현실 적용성, 실효성에 관해 분산분석 결과, 거의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세부적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사후검정-다중비교)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 통제의 중요도 관점에서 중앙공무원의 인식은 주로 집행부에 의한 내부통제(재정분석 강화, 사업예산제도강화,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도 도입)과 주민에 의한 통제를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일부 제도에 관해 시스템적 접근(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

템 등)을 선호한다. 또한 공무원(중앙·지방)집단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긍정적이다.

둘째, 자율적 통제의 현실적용성의 관점에서 중앙공무원의 인식은 집행부에 의한 내부통제 시스템(자체감사 강화, 재정분석 강화, 재정위기 관리시스템 개선, 재정운영모니터링 시스템개선,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 의회에 의한 내부통제(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강화, 지방의회 예산요구권 보장), 및 주민에 의한 내부통제(주민투표제도개선,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소환제도개선, 자치단체장 정책실패 배상제도 도입, 주민예산위원회 제도도입)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도와 동일하게 지방공무원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 주민소환제도에 긍정적 인식을 지닌다.

셋째,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중앙공무원의 인식은 집행부에 의한 내부통제(재정분석강화, 재정위기 관리시스템 개선,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구축), 지방의회의 활성화(예산요구권 보장,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개선, 전문위원 제도개선), 및 주민에 의한 내부통제(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주민소송제도개선, 주민소환제도개선, 주민투표제도개선)을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주민예산위원회 제도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결론

본 연구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과 세부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검정-다중비교 분석(scheffe)을 병행하였다. 내용을 종합하기 전 전술한 바 있는 용어에 관해 새로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요도는 제도 자체가 지니는 중요성을, 현실적용성은 실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대립 정도를, 실효성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11> 분석결과 종합에 근거하여 중요도, 현실적용성, 실효성 비교를 통해 일반화를 시도한다.

첫째, 집행부에 의한 통제 중에서 중요도 관점은 재정출납관제도 도입, 재정분석진단강화 개선, 재정운영 상시모니터링, 투·융자심사제도 개선, 사업예산제도 개선에 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중앙공무원이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실적용성 관점에서는 투·융자심사제도 개선과 사업예산제도 개선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고, 중앙공무원은 현실적용시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관점에서는 재정운영 상시모니터링,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 사업예산제도 개선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집단간 인식차이가 있는데 중앙공무원이 실효성 차원에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가능한 논리적 추론은 주로 중앙공무원이 중요성과 실효성 관점에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제도 도입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예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이창균, 2011: 381)에서 제시된 방안(투자사업이러관리 시스템구축, 외부감사제도 도입, 재정출납관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제도의 신설과 도입에 관해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회에 의한 통제 중 중요도 관점은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개선, 전문위원회제도 개선, 지방의회정책연구실 강화, 지방의회 예산요구권 보장, 전원위원회제도 도입에 관해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중앙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의회 정책연구실 강화에 그 외 변수는 지방공무원이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실적용성 관점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는데 중앙공무원이 현실적용시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예견하고 있다. 더불어 실효성 관점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집단간 인식차이가 있고, 대부분 중앙공무원이 실효성에 관해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제도만은 전문가집단과 지방공무원이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가능한 논리적 추론은 주로 지방공무원은 중요도에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용성과 실효성 관점에서 중앙공무원이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도입과정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이창균, 2011: 381)에서 제시된 방안(지방의회정책연구실 강화, 전문위원회제도,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지지하고 있지만 더 많은 제도의 신설과 도입에 관해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에 의한 통제 중 중요도 관점은 주민투표제도 개선, 주민예산위원회 신설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모바일참여제도는 전문가 집단이, 그 외 변수는 중앙공무원이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실적용성 관점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다. 대부분 중앙공무원이 제도의 도입 등 현실에 적용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예견하고 있으나 주민모바일참여제도만은 전문가 집단이 다소 제한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실효성 관점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인식차이가 있고, 대부분 중앙공무원이 실효성에 관해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예산위원회 신설은 전문가 집단이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주민에 의한 통제도 동일하게 기존 연구(이창균, 2011: 381)에서 제시된 방안(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와 주민예산위원회 제도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제도의 신설과 도입에 관한 포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감사원.(2011). 지방재정건전성 진단·점검. 감사결과발표 전문.
- 명재진.(2007).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2(3), 1-20.
- 이창균.(2011). 지방재정운영 건전성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통제 확충방안.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2
- 이창균.(2006).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장노순·정성호·유호순.(201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강원도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1): 103-130.
- 정성호.(201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 천안시를 중심으로.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7-27.
- 정성호·정창훈.(2011). 지방재정위기와 로컬거버넌스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25(2): 3-35.
- 정창훈·정성호.(2011). 자본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사업예산제도와의 연계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재정책임성강화TF 내부자료. 2011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과제 추진점검 자료, 2011.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1.
- 행정안전부.(2010), 『행정안전백서』, 행정안전부
- 總務省編, 地方財政白書 2011年版,

〈부록 1〉 자율적 통제의 중요도

종속변수	(I) 소속	(J) 소속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재정분석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364 [*]	.195	.000 ^{***}
		지방의원	1.109 [*]	.215	.000 ^{***}
		전문가	1.270 [*]	.212	.000 ^{***}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456 [*]	.161	.048 ^{**}
		전문가	1.146 [*]	.174	.000 ^{***}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690 [*]	.168	.001 ^{***}
재정운영모니터링시스템신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477 [*]	.168	.047 ^{**}
		전문가	.736 [*]	.182	.001 ^{***}
		지방의원	.839 [*]	.183	.000 ^{***}
투융자심사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754 [*]	.175	.001 ^{***}
		지방의원	.769 [*]	.193	.002 ^{***}
사업예산제도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829 [*]	.194	.001 ^{***}
		지방의원	.609 [*]	.213	.046 ^{**}
		전문가	.941 [*]	.211	.000 ^{***}
행정사무감사조사권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541 [*]	.191	.048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664 [*]	.202	.015 ^{**}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885 [*]	.161	.000 ^{***}
		전문가	.718 [*]	.175	.001 ^{***}
		지방의원	.947 [*]	.171	.000 ^{***}
지방의회정책 연구실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190 [*]	.179	.000 ^{***}
		지방의원	1.185 [*]	.190	.000 ^{***}
		전문가	1.113 [*]	.187	.000 ^{***}
지방의회 예산요구권보장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816 [*]	.178	.000 ^{***}
		지방의원	.880 [*]	.189	.000 ^{***}
		전문가	.552 [*]	.187	.036 ^{**}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지방의원	중앙공무원	.558 [*]	.177	.021 ^{**}
		지방공무원	.746 [*]	.170	.000 ^{***}
		전문가	.543 [*]	.183	.035 ^{**}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	지방의원	중앙공무원	.628 [*]	.220	.046 ^{**}
		전문가	1.102 [*]	.217	.000 ^{***}
		지방공무원	.637 [*]	.209	.028 ^{**}
주민 모바일 참여제도도입	전문가	지방공무원	.792 [*]	.214	.004 ^{***}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43 [*]	.208	.000 ^{***}
		지방의원	.809 [*]	.228	.007 ^{***}
		전문가	1.011 [*]	.225	.000 ^{***}
주민소송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874 [*]	.171	.000 ^{***}
		지방의원	.877 [*]	.188	.000 ^{***}
		전문가	1.150 [*]	.186	.000 ^{***}
주민소환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전문가	.806 [*]	.176	.000 ^{***}
	지방공무원	전문가	.501 [*]	.170	.036 ^{**}
자치단체장 배상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662 [*]	.206	.000 ^{***}
		지방의원	1.365 [*]	.227	.000 ^{***}
		전문가	1.896 [*]	.223	.000 ^{***}

주1: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 p<0.05, *** p<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와 중복된 부분은 제외함

〈부록 2〉 자율적 통제의 현실적용성

종속변수	(I) 소속	(J) 소속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자체감사 독립성 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701 [*]	.180	.000 ^{***}
		지방의원	1.643 [*]	.198	.000 ^{***}
		전문가	.998	.196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702 [*]	.188	.004 ^{**}
		지방의원	.644 [*]	.206	.023 ^{**}
재정출납관계도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252 [*]	.172	.000 ^{***}
		지방의원	.734	.189	.002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518	.182	.047 ^{**}
		전문가	지방공무원	1.105 [*]	.180
		지방의원	.587 [*]	.196	.033 ^{**}
재정분석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313 [*]	.193	.000 ^{***}
		지방의원	1.236 [*]	.213	.000 ^{***}
		전문가	.995	.210	.000 ^{***}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10 [*]	.179	.000 ^{***}
		지방의원	.909 [*]	.197	.000 ^{***}
		전문가	1.233 [*]	.194	.000 ^{***}
재정운영모니터링 시스템신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327 [*]	.202	.000 ^{***}
		지방의원	1.266 [*]	.222	.000 ^{***}
		전문가	1.389 [*]	.219	.000 ^{***}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424 [*]	.206	.000 ^{***}
		지방의원	1.226 [*]	.227	.000 ^{***}
		전문가	.744	.224	.013 ^{**}
	전문가	지방공무원	.680	.216	.021 ^{**}
지방재정공시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889	.170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523	.177	.037 ^{**}
중기지방재정계획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34 [*]	.200	.000 ^{***}
		지방의원	.873	.221	.002 ^{***}
		전문가	.982	.218	.000 ^{***}
외부감사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684	.202	.011 ^{**}
		지방의원	1.000	.223	.000 ^{***}
행정사무감사조사권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29 [*]	.167	.000 ^{***}
		지방의원	.856	.184	.000 ^{***}
		전문가	.641	.182	.007 ^{**}
전문위원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418 [*]	.184	.000 ^{***}
		지방의원	.671	.202	.013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746	.195	.003 ^{***}
		전문가	지방공무원	.902	.192
지방의회정책 연구실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925	.192	.000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893	.203
	전문가	지방공무원	.923	.200	.000 ^{***}
지방의회예산요구권보장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2.206 [*]	.189	.000 ^{***}
		지방의원	1.622 [*]	.208	.000 ^{***}
		전문가	1.392 [*]	.205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814	.198	.001 ^{***}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83 [*]	.159	.000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923	.169
	전문가	지방공무원	.837 [*]	.166	.000 ^{***}

(표 계속)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68 [*]	.201	.000 ^{***}
		지방의원	.952 [*]	.222	.001 ^{***}
	전문가	지방공무원	.900 [*]	.211	.001 ^{***}
		지방의원	.784 [*]	.230	.010 ^{***}
주민모바일참여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636 [*]	.208	.027 ^{**}
	전문가	지방공무원	.898 [*]	.217	.001 ^{***}
주민투표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66 [*]	.176	.000 ^{***}
		지방의원	.904 [*]	.194	.000 ^{***}
		전문가	1.018 [*]	.191	.000 ^{***}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883 [*]	.208	.000 ^{***}
		지방의원	1.428 [*]	.229	.000 ^{***}
		전문가	1.821 [*]	.226	.000 ^{***}
주민소송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751 [*]	.207	.000 ^{***}
		지방의원	1.543 [*]	.228	.000 ^{***}
		전문가	1.532 [*]	.225	.000 ^{***}
주민소환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전문가	.696 [*]	.182	.003 ^{**}
	지방공무원	전문가	.505 [*]	.175	.043 ^{**}
자치단체장배상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830 [*]	.200	.000 ^{***}
		지방의원	1.505 [*]	.220	.000 ^{***}
		전문가	1.747 [*]	.217	.000 ^{***}
주민예산위원회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537 [*]	.223	.000 ^{***}
		지방의원	.958 [*]	.245	.002 ^{***}
		전문가	.958 [*]	.242	.002 ^{***}

주1: 평균차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 p<0.05, *** p<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와 중복된 부분은 제외함

<부록 3> 자율적 통제의 실효성

종속변수	(I) 소속	(J) 소속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자체감사 독립성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832 [*]	.199	.001 ^{***}
		지방의원	1.014 [*]	.219	.000 ^{***}
	전문가	지방의원	.703 [*]	.228	.025 ^{**}
재정출납제도 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589 [*]	.206	.000 ^{***}
		지방의원	.909 [*]	.227	.001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680 [*]	.219	.024 ^{**}
	전문가	지방공무원	1.039 [*]	.215	.000 ^{***}
재정분석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12 [*]	.168	.000 ^{***}
		지방의원	.957 [*]	.185	.000 ^{***}
	전문가	.952 [*]	.182	.000 ^{***}	
재정위기관리시스템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326 [*]	.181	.000 ^{***}
		지방의원	1.114 [*]	.200	.000 ^{***}
	전문가	1.396 [*]	.197	.000 ^{***}	
지방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964 [*]	.215	.000 ^{***}
		지방의원	.925 [*]	.237	.002 ^{**}
	전문가	지방공무원	1.095 [*]	.225	.000 ^{***}
		지방의원	1.056 [*]	.246	.001 ^{***}
지방재정공시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614 [*]	.161	.003 ^{**}
		지방의원	.538 [*]	.178	.029 ^{**}
투융자심사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098 [*]	.210	.000 ^{***}
		지방의원	1.063 [*]	.231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742 [*]	.219	.011 ^{**}
		지방의원	.707 [*]	.239	.036 ^{**}
외부감사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598 [*]	.238	.000 ^{***}
		지방의원	1.486 [*]	.262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978 [*]	.249	.002 ^{**}
		지방의원	.866 [*]	.272	.019 ^{**}
행정사무감사조사권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953 [*]	.199	.000 ^{***}
		지방의원	1.223 [*]	.219	.000 ^{***}
		전문가	.756 [*]	.216	.008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730 [*]	.211	.009 ^{**}
	전문가	지방공무원	1.197 [*]	.208	.000 ^{***}
전문위원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810 [*]	.178	.000 ^{***}
		지방의원	1.252 [*]	.196	.000 ^{***}
		전문가	1.281 [*]	.193	.000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559 [*]	.189	.036 ^{**}
	전문가	지방공무원	.529 [*]	.186	.047 ^{**}
지방의회정책연구실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837 [*]	.201	.000 ^{***}
		지방의원	.905 [*]	.222	.001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931 [*]	.214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1.308 [*]	.211	.000 ^{***}
지방의회예산요구권보장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2.068 [*]	.201	.000 ^{***}
		지방의원	1.516 [*]	.221	.000 ^{***}
		전문가	1.233 [*]	.218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835 [*]	.210	.002 ^{**}

(표 계속)

전원위원회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765 ^{***}	.162	.000 ^{***}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833 ^{***}	.172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978 ^{***}	.169	.000 ^{***}
주민참여예산제도강화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982 ^{***}	.209	.000 ^{***}
		지방의원	1.103 ^{***}	.230	.000 ^{***}
	전문가	지방공무원	1.291 ^{***}	.218	.000 ^{***}
주민모바일참여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401 ^{***}	.260	.000 ^{***}
		지방의원	1.029 ^{***}	.286	.006 ^{***}
	전문가	지방공무원	1.307 ^{***}	.272	.000 ^{***}
주민투표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410 ^{***}	.202	.000 ^{***}
		지방의원	1.452 ^{***}	.222	.000 ^{***}
		전문가	.993 ^{***}	.219	.000 ^{***}
주민감사청구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356 ^{***}	.202	.000 ^{***}
		지방의원	1.300 ^{***}	.223	.000 ^{***}
		전문가	.861 ^{***}	.220	.002 ^{***}
주민소송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783 ^{***}	.210	.000 ^{***}
		지방의원	1.856 ^{***}	.231	.000 ^{***}
		전문가	1.389 ^{***}	.228	.000 ^{***}
주민소환제도개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1.348 ^{***}	.175	.000 ^{***}
		지방의원	1.543 ^{***}	.193	.000 ^{***}
		전문가	1.215 ^{***}	.190	.000 ^{***}
자치단체장배상제도도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763 ^{***}	.196	.002 ^{***}
		지방의원	.679 ^{***}	.216	.022 ^{***}
	전문가	지방공무원	.694 ^{***}	.205	.011 ^{***}
주민예산위원회제도도입	전문가	중앙공무원	.637 ^{***}	.223	.046 ^{***}
		지방공무원	1.056 ^{***}	.215	.000 ^{***}
		지방의원	.922 ^{***}	.235	.002 ^{***}

주1: 평균치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 p<0.05, *** p< 0.01

주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와 중복된 부분은 제외함

